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8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정동만·김선교·윤영석

박성민 • 이인선 • 김성원

이달희 • 박충권 • 서지영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 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 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 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066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방사성폐기물(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정한다): 과세 기준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자원시설세	10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아. 방사성폐기물(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정한		
	다): 과세기준일		
11. • 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